

축산보상 제대로 받는 방법(2)

지난 칼럼에서 공익사업으로 인한 수용과정에서 양계농가의 손실보상 절차에 대하여 검토해 보았다. 요약해 보면 수용의 거부는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보상금의 증액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바람직하며, 재결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전략적으로 감정평가에 대처하여 양계농가의 이익을 극대화 하자는 것이다. 또한 소송이 진행되는 경우라면 당해 양계농가의 특수한 사정을 법원의 감정평가과정에서 쟁점으로 현출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배경지식을 바탕으로 이번 칼럼에서는 수용과정에서 손실보상의 대상이 되는 축산업의 요건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49조 제2항에 따르면, ①「축산법」 제22조에 따라 허가를 받았거나 등록한 종축업·부회업·정액 등 처리업 또는 가축사육업(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② 시행규칙 별표 3에 규정된 가축별 기준마리수 이상의 가축을 기르는 경우(제2호), ③ 시행규칙 별표 3에 규정된 가축별 기준마리수 미만의 가축을 기르는 경우로서 그 가축별 기준마리수에 대한 실제 사육마리수 비율의 합계가 1 이상인 경우(제3호)가 토지보상법에서 말하는 손실보상의 대상에 해당하는 축산업이다.

먼저 양계농가가 200마리 이상의 닭을 기르는 경우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49조 제2항 제2호에 해당하여 손실보상의 대상



이 형 찬
법무법인 수호 변호사
/수의사

가 축	기준마리수
닭	200마리
토끼	150마리
오리	150마리
돼지	20마리
소	5마리
사슴	15마리
염소·양	20마리
꿀벌	20군

※ [시행규칙 별표 3] 축산업의 가축별 기준 마리수

이 된다(②에 해당하는 경우). 사육마리수는 품종별로 실제 사육마리수를 직접 헤아려 기록하되 대단위 양계장의 경우와 같이 직접 헤아리는 방법이 없을 경우 표본추출방식이나 등록신청서 및 바코드에 의한 등록현황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기본조사 및 보상업무에 관한 지침(이하 '지침'이라 함) 제44조 제3항]. 양계농가가 제시한 마리수와 감정과정에서 조사된 마리수에 차이가 있을 경우 양계농가는 농장주나 직원의 입회하에 재조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한편, 양계의 사육마리수는 수시로 변동될 수 있으므로, 기준마리수의 '사육시점'이 실질적인 손실보상과 관련하여 큰 쟁점이 된다. 출하 등의 사유로 사육마리수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조사시점이나 평가시점 또는 계약체결시점에 있어서 사육마리수 변동을 조사하여 객관적인 사육마리수를 조사하여 기록하게 된다(지침 제44조 제4항). 따라서 양계농가는 손실보상 과정에서 매매 등을 통해 토지보상법 상의 축산보상 대상에 미달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다음으로 「축산법」 제22조에 따라 '허가'를 받았거나 '등록'한 가축사육업·종축업·부화

업·정액등처리업을 영위하는 경우 손실보상의 대상이 될 수 있다(①에 해당하는 경우). '가축사육업'이란 가축을 사육하여 판매하거나 젖·알·꿀을 생산하는 업을 말한다. '종축업'이란 종축을 사육하고, 그 종축에서 번식용 가축 또는 씨알을 생산하여 판매하는 업을 말한다. '부화업'이란 닭 또는 오리의 알을 인공부화 시설로 부화시켜 판매하는 업을 말하며, '정액등처리업'이란 종축에서 정액·난자 또는 수정란을 채취·처리하여 판매하는 업을 말한다.

양계농가가 기준마리수 이상의 닭을 사육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닭 이외의 돼지, 염소, 토끼 등과 같은 가축을 함께 사육할 경우 '축산업'의 요건에 해당할 수 있다(③에 해당하는 경우).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49조 제2항 제3호는 여러 가축을 함께 기르는 경우에 대한 요건인데, 별표 3에 규정된 가축별 기준마리수에 대한 실제 사육마리수 비율의 합계가 1 이상의 경우에 손실보상 대상 축산업으로 본다. 계산방법이 조금 까다로울 수 있으므로 예를 들어 이해해 보자. 닭 100마리와 사슴 7마리를 사육하는 경우 비율의 합계가 0.96($0.96 = 1/200 \times 100 + 1/15 \times 7$)으로 1에 미달되어 축산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지만 닭 100마리와 소 3마리를 사육하는 경우 비율의 합계가 1.1($1.1 = 1/200 \times 100 + 1/5 \times 3$)로 1이상에 해당되어 토지보상법상 손실보상의 대상이 된다. 즉 양계농가가 닭을 200마리 이상 기르지 않더라도 닭과 함께 다른 가축을 기르는 경우라면 토지보상법 제49조 제2항 제3호에 의하여 손실보상 대상 축산업에 해당될 수 있다. 따라서 기준마리수에 미달되어 손실보상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선불리 판단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양계**